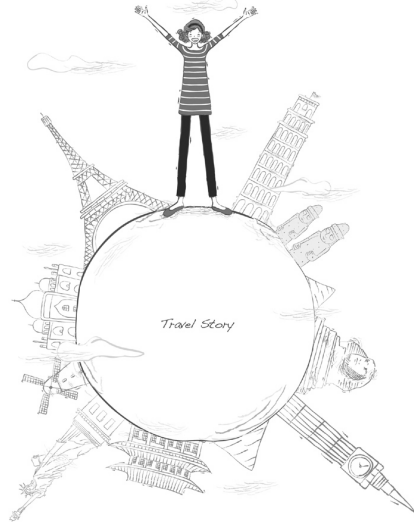




국제회계기준 도입

안세회계법인 이사

고 영 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해줄 것, 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 도입해줄 것, 감가상각단위에 대한 회계와 세무상 차이를 조정해 줄 것, 유형자산 일부 대체 시 즉시상각을 허용해 줄 것, 유가증권 거래비용에 대한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조정해 줄 것,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조정해 줄 것,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한국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내법체제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법적 권위 있는 기관이 공식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채택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미한다. 따라서 K-IFRS 각 기준서를 준수하면 대응되는 IFRS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현재 공표된 K-IFRS는 ‘기업회계기준서’ 37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27개 등 총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Standards)는 목적, 적용범위, 회계처리방법, 공시, 부록 등으로 구

성되며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지침으로서 서문, 결론도출근거,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등이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Interpretations)는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새롭게 인식된 재무보고 문제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또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면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은 크게 연결중심 공시체제로의 전환, 공정가치 평가 확대, 경제적 실질 등을 반영한 회계처리, 원칙중심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결중심 공시체제로의 전환 내용을 살펴보면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가 되고 분·반기에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종속기업을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및 이유 등 종속회사의 비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연결범위는 50% 초과 소유 주주 또는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 100억원 미만 기업이나 특수목적기업 등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중간 지배기업, 법규에서 규정하거나 연결재무제표작성 기업이 추가로 작성하기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배력 상실 시점의 잔존 보유주식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정보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유형·무형자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의 경우 원가모형이나 공정가치를 활용한 재평가모형 중 선택하여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그 정보를 주요 경영진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하면 당기손익항목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는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권은 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매년 손상여부를 평가하거나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손상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염가매수 등에 의해 발생한 부의 영업권 개념이 제외되어 있다.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은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은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와 신용·유동성·시장리스크 등과 관련된 공시를 추가적으로 상세히 요구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설정 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존에 자본으로 분류하였던 상환우선주를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채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원칙적으로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요건을 충족하면 그 권리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부실자산 처리 등이 대부분 매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 내용, 근거, 사용한 가정 및 이에 대한 합리성 공시, 부문별 영업성과 및 자산·부채 현황에 대한 내부 경영보고 수준의 공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관리방법 및 리스크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 경영보고 수준의 공시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무형자산 평가, 국제회계기준 최초 도입시 특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방법 등에서 복수의 대안을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국제회계기준이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되며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재무상태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존 손익계산서에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지분통합법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결합을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경우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고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거래 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유사한 기업회계기준서 및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는 기업회계기준서 및 재무회계개념체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정

도로만 고려하여야 하며, 중대한 오류 개념이 삭제되고 중대한 오류와 중요한 전기오류의 구분이 폐지되어 전기오류가 중요하다면 소급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계약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에 대한 진행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미청구공사를 자산으로 초과 청구공사를 부채로 표시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요건 중 과세소득 발생가능성 판단기준을 거의 확실(80% 이상)에서 높은(50% 초과) 으로 완화하였고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시 일시적 차이에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의 일부가 별도의 인식단위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하고 유형자산의 일부의 원가가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별도로 상각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의 즉시 비용화를 삭제하고 자본화만을 인정한다.

금융상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분류하는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나 별개의 손익계산서의 손익항목으로 표시하고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을 통한 결제가 요구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수량과 교환되는 대가의 금액이 모두 확정되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자산손상의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손상차손이 인식되고 현금창출단위(창출하는 현금유입의 대부분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의 손상차손은 먼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 인식하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에 각각 장부금액 비례로 배분한다.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으로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높지 않은’, ‘아주 낮은’ 경우로 구분하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순현금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내용연수비한정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정기적인 손상평가를 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의 인식·측정과 관련하여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취득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금융부채의 계약조건 변경이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구분없이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며, 어떤 경우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 변경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서 다른 금융상품 분류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하여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만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과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환입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분리 측정할 수 있고 비상위험준비금의 인식이 금지되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에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연법인세 인식조건 중 과세소득 발생가능성 판단기준을 거의 확실(80% 이상)에서 높은(50% 초과)으로 완화하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많은 문제점과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입 의무화 기업들의 이해 부족과 도입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현재 상장기업의 IFRS 도입 착수율은 75.1%이고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기업들은 33.9%가 미착수 상태이다. 세법, 상법, 감사 및 감리기준, 공시제도 등 관련 법규와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고, 원칙 중심과 다양한 선택 대안을 인정하는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상 정보제공자의 경우 기준 적용과 해석에 많은 혼선과 오류가 예상되며, 정보이용자의 경우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재무제표 이해력이 떨어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정보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국제회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노력도 부진한 실정이다.

위와 같이 도입 준비와 실제 적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혼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회계기준 미흡 요인을 제거하여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재무정보 제공으로 해외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향상되며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분석 및 접근성이 용이해져 해외자본조달을 위한 추가적

● 이야기가 있는 회계여행

인 회계관련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해외 상장기업의 경우 국내 재무제표를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다양한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원칙위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표시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기업내부의 통합관리, 전략적 지배구조 선택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효과는 경제적 실체로서의 기업의 실질을 반영하는 질 높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